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2. 17 선고 2021가단123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김록영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선민, 김용호, 박소영

변론 종결2023. 1. 25.

판결 선고2023. 2. 17.

주 문

1.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F 사이에 2017.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F에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7. 6. 21. 접수 제63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과 F 사이에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F에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4. 3. 접수 제3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F, 피고 C와 F, 피고 D과 F 사이에 2017. 6. 20. 각각 체결된 매매예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은 F에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7. 6. 21. 접수 제6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가.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F, 피고 C와 F, 피고 D과 F 사이에 2017. 6. 20. 각각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2,084,7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2,084,7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84,7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 4의 가, 나. 항 및 피고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8,339,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8,339,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는 2017. 5. 31. F에게 11,000,000원을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12.8%, 연체이자율 연 24.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G 주식회사는 F에 대하여 '10,237,126원 및 그 중 9,714,783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그 지급명령이 2018. 9. 21.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차전274).

G 주식회사는 2018. 10. 16.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1. 2. 위 지급명령에 터잡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E은 F의 어머니이고, 피고 B, C, D은 F의 형제들이다.

다. F은 위 대출이 발생한 이후인 2017. 6. 19.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등기 경료 직후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별지 목록 1번 부동산: 2017. 6. 20. 피고 B에게 증여, 2017. 6. 2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7. 6. 21. 접수 제6307호)

2) 별지 목록 2 내지 6번 부동산: ① 2017. 6. 20. 피고 C, D, B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2017. 6. 21.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7. 6. 21. 접수 제6309호), ② 2018. 4. 3. 피고 E에게 전체 부동산(전체 지분)을 증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4. 3. 접수 제3068호)

라.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을 증여받은 E은 2019. 1. 28. 위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였고, 2019. 1. 3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앞서 1. 다.항에서 본 F의 처분행위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의 것들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연체 이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채무불이행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먼저 2017. 6. 20.자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다(별지 목록 1번 부동산에 관한 2017. 6. 20.자 피고 B에 대한 증여, 별지 목록 2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0.자 피고 C, D, B에 대한 매매예약).1) 가)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관하여 'F에 대한 피고 E의 일방적인 증여로 인하여 가족 간에 분란이 생겨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F에게 어떠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매매예약 또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무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지거나 그 무자력이 심화되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2) 나) 2017. 6. 20.자 법률행위 이후 F은 아래와 같이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어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는바 위 2017. 6. 20.자 법률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별지 목록 2번 부동산 중 1/4 지분	3,184,500(= 전체토지 시가 12,738,000원 × 1/4 지분)	이 사건 양수금채권	11,000,0003)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별지 목록 3번 부동산4) 위 건물 중 목조 스테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 50.9㎡'는 현황열실(2022. 12. 16.자 감정평가서 참조) 중 1/4 지분	44,725(= 전체건물 시가 178,900원 × 1/4 지분)	I조합에 대한 2013. 4. 3.자 신용대출금	5,000,0005) 2022. 5. 13.자 신용정보조회신 제6쪽(전자기록 기준, 이하 같다) 참조(통보일자 2017. 4. 5.).
3	별지 목록 4번 부동산 중 1/4 지분	13,520,600(= 전체토지 시가 54,082,400원 × 1/4 지분)	G에 대한 2015. 9. 23.자 대출금	16,518,0006)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6.)
4	별지 목록 5번 부동산 중 1/4 지분	10,691,400(= 전체토지 시가 42,765,600원 × 1/4 지분)	J카드에 대한 채무(등록일자 2017. 1. 17.)	4,200,0007)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9.)
5	별지 목록 6번 부동산 중 1/4 지분	1,498,150(= 전체토지 시가 5,992,600원 × 1/4 지분)	J카드에 대한 채무(등록일자 2017. 3. 17.)	10,000,0008) 위 신용정보회신 제6쪽 참조(등록사유 발생일자 2017. 3. 17.). 원고가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주장하는 듯하나 2018. 4. 3.자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를 보기 위한 소극재산 산정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함은 단순한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6	전북 순창군 L	11,999,9009) 강제경매절차에서 2019. 11. 19.을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 결과이다. 그러나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상승하였는바 시가 또한	M카드에 대한 채무	5,900,00010)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9.)

1	별지 목록 2번 부동산 중 1/4 지분	3,184,500(= 전체토지 시가 12,738,000원 × 1/4 지분)	이 사건 양수금채권	11,000,0003)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2017. 6. 20. 당시 시가로 봄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위 시가감정 결과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로 본다.		
7		N카드에 대한 채무	2,462,00011) 위 신용정보회신 제8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9.)	
8		○조합에 대한 채무	1,200,00012)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3.)	
합계	40,939,275		56,280,000	

2) 다음으로 2018. 4. 3.자 피고 E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7. 6. 20.자 법률행위 이후 F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2017. 6. 20.자 법률행위로서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달리 유의미하게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6. 20.에 비하여 별지 목록 2, 4 내지 6번 부동산의 시가가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7. 4. 3. 당시 F의 채무는 54,599,000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을 뿐인바, 결국 2018. 4. 3.자 피고 E에 대한 증여는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M카드에 대한 채무 8,000,000원(2022. 5. 13.자 신용정보조회회신 제20쪽 참조, 변동일자 2018. 2. 19.)

② N카드에 대한 채무 2,580,000원(위 신용정보조회회신 제20쪽 참조, 변동일자 2018. 3. 9.)

③ J카드에 대한 채무(등록사유 발생일자 2017. 1. 17.) 5,600,000원(위 신용정보조회회신 제21쪽 참조, 변동일자 2018. 3. 12.)

- ④ J카드에 대한 채무(등록사유 발생일자 2017. 3. 17.) 7,941,000원(위 신용정보조회회신 제20쪽 참조, 변동일자 2018. 2. 14.)
- ⑤ I조합에 대한 2013. 4. 3.자 대출금채무 5,000,000원(위 신용정보회신 제21쪽, 통보일자 2018. 3. 16.)
- ⑥ O조합에 대한 채무 2,400,000원(위 신용정보회신 제21쪽 참조, 변동일자 2018. 3. 15.)
- ⑦ 이 사건 양수금채무 9,714,000원(위 신용정보회신 제19쪽 참조, 변동일자 2018. 2. 12.)
- ⑧ G에 대한 2015. 9. 23.자 대출금채무 13,364,000원(위 신용정보회신 제22쪽 참조, 변동일자 2018. 3. 30.)

3) 피고는 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위 각 법률행위로 인하여 F으로부터 피고들에 이전된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위 채무를 산정함에 있어 연체된 채무만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 수가 없다. 또한 피고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들어 앞서 본 적극재산의 산정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들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F과 원고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E의 소유로서 F으로의 증여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의 분란이 발생하여 매매예약 및 증여들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F과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것이지 다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고 E 명의로 원상복귀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매매예약 등의 계약은 채무불이행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 경위나 사해행위 시점과 연체 발생시점 사이의 간격 등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불만한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과 피고들 사이의 밀접한 인적관계, F에 대한 피고 E의 증여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해행위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가 상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E의 F에 대한 일방적인 증여 직후 피고 B 등 형제들이 증여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 E의 F에 대한 증여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해행위 사이의 간격은 하루 정도로 매우 짧아 오직 형제들 사이의 재산분배만을 위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에는 급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따라서, 별지 목록 1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것이나,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E에 대한 2018. 4. 3.자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 E이 이를 H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에 관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법리(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전부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분의 가액만큼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2. 8. 기준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의 시가가 8,339,1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현출된 위 부동산의 가액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위 가액을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의 전체 공동담보가액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C, D, B이 각 1/4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공동담보가액 및 이익은 각 2,084,775원(= 위 8,339,100원 × 1/4)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 E이 취득한 이익은 그 전체 지분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던 3/4 지분을 공제한 1/4 지분의 가액 상당액인 2,084,775원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가액은 위 각 2,084,775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에 관한 각 사해행위는 위 각 2,084,7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 1) 별지목록 1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F 사이에 2017.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F에게 이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별지목록 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F 사이에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F에게 이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별지목록 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과 F 사이에 2017. 6.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위 각 피고들은 F에게 이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별지목록 6번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각 피고들과 F 사이에 2017. 6. 20. 체결된 각 매매예약과,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2,084,7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84,7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드모데

별지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0.자 법률행위와 2018. 4. 3.자 피고 E에 대한 증여계약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야 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사해행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즉, 2017. 6. 20.자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때 2018. 4. 3.자로 증여된 부분의 가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각 법률행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행위를 모두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이에 관한 특별한 실익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률행위의 각 일자별로 사해행위성을 판단한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에는 2011. 10. 25.자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9,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1번 부동산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7. 6. 20.에 가까운 2017. 1. 1.자 별지 목록 1번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 69,100,000원(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검색결과 참조)을 고려하면 위 근저당권을 공제하더라도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여한 것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추산 공동담보가액은 12,092,210원[= 감정평가가액 20,837,200원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보는 채권최고액 29,000,000원 × (감정평가가액 20,837,200원 앞서 본 개별주택가격 69,100,000원)], 공동담보가액의 산정에 있어 공동담보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그 피담보채무액을 안분하여 해당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3)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위 건물 중 목조 스테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 50.9㎡'는 현황멸실(2022. 12. 16.자 감정평가서 참조)

5) 2022. 5. 13.자 신용정보조회회신 제6쪽(전자기록 기준, 이하 같다) 참조(통보일자 2017. 4. 5.).

6)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6.)

7)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9.)

8) 위 신용정보회신 제6쪽 참조(등록사유 발생일자 2017. 3. 17.). 원고가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주장하는 듯하나 2018. 4. 3.자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를 보기 위한 소극재산 산정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함은 단순한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9) 강제경매절차에서 2019. 11. 19.을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 결과이다. 그러나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상승하였는바 시가 또한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2017. 6. 20. 당시 시가로 봄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위 시가감정 결과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로 본다.

10)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9.)

11) 위 신용정보회신 제8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9.)

12) 위 신용정보회신 제9쪽 참조(변동일자 2017. 6. 13.)